

「구미시 향토장수소상공인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활성화
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3년 6월 27일

나. 발 의 자: 김민성·강승수·김근한·김낙관·김영길·김영태·김원섭·김재우·
김정도·김춘남·박교상·박세채·소진혁·신용하·양진오·이명희·
이상호·이정희·이지연·장미경·장세구·정지원·추은희·허민근
의원(24명)

다. 회부일자: 2023년 6월 28일

라. 상정일자: 2023년 7월 6일

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민 성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관내에서 2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온 소상공인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, 가업승계인의 책무(안 제1조~제4조)
- 가업승계업체 지정 및 가업승계 지원, 지정취소(안 제5조~제7조)
-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제척·기피·회피, 해촉, 운영 등(안 제8조~제14조)
- 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(안 제1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,
 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,
 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,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부서검토 : 일자리경제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용 덕

○ 본 조례안은

- 관내에서 2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가업승계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각종 사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코로나 19 이후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업을 승계

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장수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